

UPDATES 법률정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및 전망

대법원, 근로자파견과 사내도급의 구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제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규제 활성화

LBO 관련 판례 동향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CASES 업무사례

- 사우디 Aramco의 S-Oil 지분 추가 인수
- 농협금융지주의 우리아비바생명보험 매각
- J-Trust의 SC저축은행 및 SC캐피탈 인수
- 담합의 종기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 선고
- 신세계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 정유사들의 원적지 담합 관련 대법원 판결 선고
- 우리은행 해외 신종자본증권(Tier 1 Subordinated Notes) 발행 관련 자문
- 휠라코리아 쇼군본드 발행 관련 자문
- 제이알 제17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디큐브백화점 매입 및 장기 임대
- 국민연금공단 스웨덴 복합 쇼핑몰 투자 거래
- 주식 매매잔금의 금전소비대차 전환에 대한 판결
- 옥션 해킹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
-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방송사업자 간의 합병 거래
- 광고선전비 관련 관세 소송 승소 사례
- 안방생명보험의 동양생명보험(주) 인수
-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처분 취소소송 승소

NEWS 새소식

- 올해의 최우수 아시아 로펌 선정 - International Legal Alliance Summit & Awards 2015
-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5
- 10년 연속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Who's Who Legal Awards 2015
- 2015 굿 컴퍼니 컨퍼런스 강연
-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 참여
- 국제운송 클레임 대응방안 기업설명회 발표
- 성북구-김앤장, 성북미래법조인 꿈키움 프로젝트 추진
-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금융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및 전망

인터넷전문은행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시 금리, 수수료 및 고객 접근성 측면에서 소비자의 이익이 확대되고, IT활용을 통한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 개발로 인하여 은행산업 전반의 경쟁 촉진되어 소비자 효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민관합동 인터넷은행 Task Force팀을 통하여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관련 법률안 및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2015년 4월 16일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Task Force팀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제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위 세미나에서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 및 시사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 소유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위 세미나에서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대한민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적기이자 호기”라고 언급하는 등 현재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을 위한 제반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주요 규제완화 사항으로서 2015년 5월 18일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제도의 완화(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 18일 (1) 현행 은산분리 제도하에서 시범적으로 1~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고, (2)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이후에 추가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는 단계적 추진전략(Two-Track approach)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는 7월 10일에 은행업 인가 매뉴얼을 배포하였고, 7월 22일에 인가매뉴얼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중에 예비인가에 대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금년 정기 국회에서는 비금융주력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4%에서 50%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상환 변호사(shlee@kimchang.com), 이학진 변호사(hakjin.lee@kimchang.com)

인사·노무

대법원, 근로자파견과 사내도급의 구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제시

대법원은 그간 산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던 근로자파견과 사내도급의 구분에 대해 2015년 2월 26일 같은 날 선고된 일련의 사건들(현대자동차 사건, 남해화학 사건, KTX 승무원 사건)에서 이전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기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부(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하는 경우 등)
-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 관리에 대한 결정권한을 행사하는지 여부(작업에 투입된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
-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어 있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도급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지 및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 수급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KTX 승무원 불법파견 사건에서 도급업체인 한국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의 업무와 수급업체 소속 KTX 승무원의 업무가 구분된 점, 수급업체가 독립적으로 KTX 승객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직접 고용한 KTX 승무원을 관리하면서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파견을 부정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에서 수급업체 근로자들을 파견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이라고 판단한 것과 다른 결론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는 경우, 도급업체는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정규직 직원과의 임금 차액 지급 및 형사처벌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내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제시하는 기준 및 그에 따른 하급심 판결례 등을 검토하여 사업장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파견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원정 변호사(wjkim@kimchang.com), 정성욱 변호사(sungwook.jung@kimchang.com)

환경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규제 활성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기환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지난 2015년 3월 20일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판단지침(환경부 고시, “판단지침”)에 대한 기업,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현행 환기환산법에 따르면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제조업자 등”)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법인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표시·광고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될 예정인 판단지침에서, 포괄적 환경성 표시·광고, 제3자 내지 자가 인증에 관한 표시·광고, 무함유 표시·광고, 물질 감축 표시·광고, 탄소배출 감축 및 탄소 상쇄 표시·광고, 재활용 성분 표시·광고, 신재생 에너지 내지 물질 표시·광고, 환경오염 저감 표시·광고 등 각 유형별 구체적 판단기준 및 관련 예시들이 제시되어, 향후 기업체들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표시·광고를 함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환기환산법 개정안은 환경성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환경성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윤정 변호사(yjlee@kimchang.com), 이주형 변호사(joohyoung.lee@kimchang.com)

기업법무

LBO 관련 판례 동향

최근 법원은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LBO") 거래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년 1월 22일 차입매수(LBO) 거래에 대한 배임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이른바 "하이마트"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동안 대법원은 담보제공형 LBO가 문제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 최초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이래 대부분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왔고, 유상감자형·배당형 LBO가 문제된 대선주조 사건에서는 2013년 6월 무죄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담보제공형 LBO와 유상감자·배당형 LBO에 대해서는 일응의 처벌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합병형 LBO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적용된다고 할 만한 선례가 없어 법적 위험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는데, 하이마트 판결은 차입매수(LBO) 구조 중 이른바 "합병형" 구조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2015년 3월 12일, 담보제공형 LBO 방식으로 주식회사 온세통신(현 온세텔레콤)을 인수하여 배임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유비스타대표이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동안 법원은 담보제공형 LBO에 대해서는 대부분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담보제공형 LBO 거래의 경우에도 예컨대 투자금 중 상당부분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되었고, 지분 100% 인수 및 합병을 통해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하여, 기존의 주류적 판례와 입장을 다소 달리 하였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LBO 거래의 위법성에 대해서 개별 사건마다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LBO 방식을 통한 기업인수를 고려하시는 경우에는 여전히 거래의 법적 위험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구 변호사(jkpark@kimchang.com), 김태오 변호사(teo.kim@kimchang.com)

금융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5년 4월 22일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혁방안의 특징은 (1)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강화, (2) 방어권 강화, (3) 금전제재 강화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검사 부분 개혁방안

- 현장검사를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하여 실시: 기존에는 현장검사를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로 나누어 실시하여 왔으나,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검사를 점차 폐지하고 자산건전성을 점검하는 ‘건전성 검사’와 특정이슈의 위규가 문제되는 경우 실시하는 ‘준법성 검사’로 분류하여 진행(2016년 1월 시행).
- 여신부실 또는 금융사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 금융회사에 위임: 여신부실 또는 금융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 및 제재 처리를 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은 사후적으로 처리의 적정성 등 내부통제 시스템 위주로 점검을 하기로 함. 단, 조직적 불법여신, 배임·횡령, 중대한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등의 경우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할 예정.
- 확인서 대신 감사의견서 교부: 기존에는 금융회사의 검사과정에서 위규 사항이 발견되면 금융회사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나, 이러한 확인서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서명날인이 필요하였으므로 검사 대상자의 자백을 강요하는 조치라고 비판 받아옴. 이에, 확인서 대신 검사 지적사항이 기재된 검사반장 명의의 감사의견서를 해당 금융회사에 교부하여 금융회사의 방어권을 보장하기로 함.
- 자료제출요구의 제한: 현장 검사 시 자료제출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불필요하고 과도한 자료요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감사원 복무수칙을 보완하고(2015년 7월 시행), 금융감독원 고유의 감독이나 검사 목적 외에 외부기관(국회, 한국은행 등)의 요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로 함(2015년 중 추진).
- 감사원 복무수칙 보완: 금융회사의 검사 수검 편의를 위한 조치로서 ① 요 경영일정 등을 반영하여 검사시기 조정, ② 현장검사 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도록 유의, ③ 검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적인 감사원 복무수칙을 마련하기로 함(2015년 7월 시행).

2. 제재 부분 개혁방안

- 개인에 대한 신분 제재 대신 기관에 대한 금전제재 위주로 전환: 개인제재보다는 기관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등 금전제재의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할 계획. 개인제재의 경우 양정기준을 현행 5단계에서 2단계(경·중징계)로 조정하거나, 양정의 하한을 없애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
- 금융회사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구 조치의뢰), 현지조치 활성화: 금융감독원이 조치의뢰한 직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처리결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금융회사의 책임자를 문책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예정.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검사반장 책임 하에 현지조치 할 수 있는 통보기간을 종합검사의 경우는 종료 후 15영업일, 부문검사의 경우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로 제한할 예정(2015년 7월 시행).

이상환 변호사(shlee@kimchang.com), 이학진 변호사(hakjin.lee@kimchang.com)

방송·통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 발전법”)이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클라우드컴퓨팅은 급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도입이 저조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정부의 클라우드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기존 규제를 개선하며,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입법 취지로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창조과학부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제정되었습니다.

클라우드 발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전산시설등의 구비: 다른 법령에서 인·허가 등의 요건으로 전산시설 등을 규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전산시설 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
- 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된 국가의 정보 등을 알려주도록 요구할 수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된 국가의 명칭 공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작업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클라우드 발전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령의 내용도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동식 변호사(dschoi@kimchang.com), 김영준 변호사(youngjoon.kim@kimchang.com)

사우디 Aramco의 S-Oil 지분 추가 인수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Aramco의 자회사인 Aramco Overseas Company, B.V.는 종래 S-Oil(주)의 지분 34.97%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였으며, 2015년 1월 19일 한진에너지(주)로부터 S-Oil(주)의 지분 26.55% (31,983,586주)를 약 1조 9,829억 원에 추가로 취득하였습니다. Aramco Overseas Company, B.V.는 위 거래의 결과 S-Oil(주)의 지분 61.52%(우선주 포함)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본건 거래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Aramco Overseas Company, B.V.를 대리하여 계약 협상, 제반 신고·보고, 거래종결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거래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의 우리아비바생명보험 매각

2014년 11월 10일, 농협금융지주(주)는 (주)DGB금융지주에게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의 주식 14,573,773주 (98.89%)를 700억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농협금융지주가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을 인수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건 매각을 진행하게 되어 거래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반대 등 여러 이슈들이 제기되었으나, 김·장 법률사무소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러한 이슈들을 원활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본건 거래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매도인인 농협금융지주(주)를 대리하여 법률실사의 수행, 주식양수도계약 등 관련 계약 협상 및 계약서의 작성, 체결, 거래종결업무 등의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매각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J-Trust의 SC저축은행 및 SC캐피탈 인수

일본 금융회사 J-Trust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로부터, 2015년 1월 19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SC저축은행") 지분 100%를, 2015년 3월 30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SC캐피탈") 지분 100%를 각 취득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의 비즈니스 구조개선 및 핵심 사업 부문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J-Trust는 SC저축은행 및 SC캐피탈의 인수로 인하여 한국에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건 거래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J-Trust 및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를 각 대리하여, 거래구조 수립, 법률 실사, 협상 및 거래문서 작성, 기업결합신고, 저축은행 대주주 변경승인 및 거래종결 등 본건 거래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담합의 종기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 선고

최근, 연간 단가계약에 관한 입찰에서 투찰가격, 수주 예정사, 들러리와 물량배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담합의 종기는 합의에 따른 마지막 입찰 계약 체결일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전선 제조업체들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진행된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전선 품목·규격별로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주계약자), 낙찰업체와 들러리 업체들 사이의 물량배분에 관한 담합을 하였습니다. 본건 담합은 소위 연간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에 대한 것으로서, 전선업체들은 입찰을 통해 정해진 단가에 따라 1년의 계약기간 동안 계약자를 상대로 수시로 발주된 물량을 다른 사업자들에게 합의된 비율대로 지속적으로 물량을 배분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본건 공동행위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최고한도가 5%에서 10%로 상향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종기가 언제였는가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최고한도가 5% 또는 10%로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본건처럼 담합에 따른 계약 체결 후 사업자들 사이에 물량을 배분한 행위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된 경우에는 공동행위의 종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선례가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고등법원은, 본건 합의에 물량배분에 관한 합의도 포함되므로 물량배분 행위도 실행행위라는 전제에서 최후의 물량배분 시점까지 공동행위가 유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소는 본건 입찰 및 연간 단가계약의 특수성과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의 내용에 천착하여, 본건 담합은 입찰에 따른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가격과 거래 당사자, 배분될 물량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계약 체결시 경쟁제한적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며, 그 후 계약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물량 배분행위는 그 결과물을 내부적으로 나누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경쟁제한적 효과의 평가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고, 대법원으로부터 본건 담합의 종기는 계약 체결시라는 판단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앞으로 본건과 유사한 연간 단가 계약 형태의 계약 또는 입찰에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거래제한 합의의 종기에 관한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신세계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세계에 부당한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5년 1월 29일 공정위의 처분을 일부 취소판결 한 고등법원의 판결 중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신세계가 이마트나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한 매장의 판매수수료를 낮추는 방법으로 계열사인 신세계SVN에 대해 부당지원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약 40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문제를 삼은 네 가지 사업부문 중 세 가지에 대해서는 지원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판매수수료를 산정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마트 내 인스토어베이커리 매장인 ‘데이앤데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정상판매수수료를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정위의 ‘데이앤데이’에 대한 정상판매수수료를 산정이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1) 다른 대형할인점에 입점하여 ‘데이앤데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장을 운영한 독립회사 사이의 거래 또는 (2) 이마트 매장에 입점하여 ‘데이앤데이’와 유사한 매장을 운영한 독립회사 사이의 거래 중에서 이 사건 거래와 비교하기 적합한 사례를 먼저 선정한 다음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비교가능성을 높인 후에 정상판매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추산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공정위가 이마트에 입점한 도너츠와 만두 매장의 판매수수료율과 비교하여 정상판매수수료를 산정한 점에 대하여 입점업체의 취급 품목, 매장 크기, 종업원 수, 투자비, 매출액, 인지도, 고객유인 효과 등에서 이 사건 거래와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례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적합한 사례라고 하더라도 위 차이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은 판매수수료율을 그대로 정상판매수수료율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신세계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유사들의 원적지 담합 관련 대법원 판결 선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정유 4사의 담합을 이유로 S-Oil(주)에 대하여 부당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5년 1월 29일 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정유 4사가 타사의 원적 주유소를 자기의 거래상대방으로 유치함에 있어 원적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원적 관리’를 통해 주유소를 통하여 공급되는 국내 경질유 석유제품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S-Oil(주)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4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여기서 '원적'이란 특정 정유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상표를 표시하여 영업을 하다가 계약이 종료된 경우 타 정유사와 거래하려는 주유소에 관하여 종래 정유사와의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위 처분에 대하여, 공정위가 에쓰오일이 담합에 가담하였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증거들은 담합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S-Oil(주)이 담합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담합에 있어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정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의 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S-Oil(주)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증권

우리은행 해외 신종자본증권(Tier 1 Subordinated Notes) 발행

우리은행은 지난 2015년 6월 11일 총액 미화 5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Tier 1 Subordinated Notes)을 해외 사모 발행하였습니다.

본건 발행은 Basel III가 도입된 이후, 신종자본증권으로서 국내 최초 해외발행 사례로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2014년 5월 국내 최초로 Basel III에 따른 우리은행의 후순위채(Tier II Subordinated Notes) 해외발행을 성공적으로 자문한 것에 이어, 본건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관련 계약서 검토 업무를 비롯하여,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 관련 법률상 규제 저촉 가능성, 신종자본증권 해외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이자·배당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 특히 해외에서 통용되는 이자·배당지급 조건, 중도상환조건 검토 등 발행 과정에서 제기된 법률상 이슈 해결을 위하여 감독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 등 필요한 전반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힐라코리아 쇼군본드 발행

힐라코리아 주식회사는 2015년 3월 31일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이 보증하는 총액 미화 6,500만 달러 규모의 쇼군본드(3년 만기, 변동금리 3m libor,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보증, 적격 기관투자자 한정)를 사모 발행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쇼군본드 발행과 관련하여 관련 계약서 검토 업무를 비롯하여, 자본시장법, 민사소송법 등 국내법상 자문업무, 계약서 번역 제공업무 등 전반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제이알 제17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디큐브백화점 매입 및 장기 임대

외국계 국부펀드와 해외 연기금이 공동 투자한 제이알 제17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REITs")는, 2015년 3월 12일 대성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디큐브백화점을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5월 15일 그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에 디큐브백화점을 20년 동안 임대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CR-REITs의 설립 및 영업인가 관련 업무, 법률실사,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및 대출계약의 협상 및 체결 등 일련의 거래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특히 백화점 영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고려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거래 완수에 기여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스웨덴 복합 쇼핑몰 투자 거래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2월 핀란드 연기금인 Varma Mutual Pension Insurance Company ("Varma") 및 영국의 위탁운영사인 Grosvenor Fund Management Europe ("Grosvenor")와의 합작 투자를 통하여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대형 복합 쇼핑몰인 Skärholmen Centrum을 취득하였습니다. 본건 거래에 있어 투자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SEK 1,141,500,000(약 1,540억원), Varma는 SEK 570,750,000(약 770억원), Grosvenor는 SEK 190,255,000(약 256억원)입니다. 본건 거래는 국민연금공단이 사실상 처음으로 북유럽 지역에 대규모 부동산 투자를 한 건으로 특히 외국 연기금과 공동 투자를 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본건 거래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합작투자 계약서, 대상 부동산의 실사보고서 및 매매계약서의 검토, 협상과 체결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는바, 합작 투자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원활한 자금의 조달 및 거래 진행을 위한 적절한 거래 구조 및 거래 조건을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거래의 성공적인 완수에 기여하였습니다.

주식 매매잔금의 금전소비대차 전환에 대한 판결

2015년 3월,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매매거래에서 잔금 지급 이전에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잔금의 세법적 성격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건은 원고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회사 주식을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의 5%는 계약금으로 매매계약 체결일에, 매매대금의 5%는 중도금으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뒤에, 잔금은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뒤에 각각 받기로 하고 주식은 중도금을 받으면서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입니다. 본건에서 과세당국은 잔금은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한 날부터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내국법인에게 인정이자 상당액과 실제 인식한 이자수익과의 차액을 과세소득에 가산하고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회사 주식을 양도한 것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이며 잔금을 2년 뒤에 지급 받기로 한 것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간에 약정한 것으로 중도금을 받으면서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잔금이 주식 양도일부터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상기 판결은, 매매대금 중 잔금의 지급이 통상의 경우보다 장기이고 잔금 지급 전에 해당 자산이 양도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지만 이렇게 거래하기로 당초부터 약정한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산 매매거래의 외관을 그대로 인정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대법원을 포함한 각 심급별 법원으로부터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옥션 해킹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

eBay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옥션(Auction)은 2008년 초 해커의 침입으로 회원들의 아이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사고를 당하였고, 이에 약 14만여 명의 원고들이 2008년 4월경 옥션을 피고로 하여 해킹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소송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이었습니다. 원고 및 피고측은 소송 과정에서 옥션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치열한 법정 공방을 하였는데,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과 제2심(서울고등법원)은 충분한 심리 이후 옥션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하였으며, 최근 대법원도 2015년 2월 12일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옥션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체적심은 “사고 당시 옥션의 보안 조치, 해킹 방지 기술의 발전 상황, 해킹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옥션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옥션이 옛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해도 업체가 미리 충분한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해당업체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외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민사상 배상책임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본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피고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피고를 도와 수사기관에 피해내역을 신고하고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공지하는 등 해킹사고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김·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소송을 대리함에 있어서도 법률적 관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과 해킹사고에 있어 과실 판단 기준을 밝히고 당시 피고가 취한 각종 보호조치를 효과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해킹사고 피해 회사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 기준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방송사업자 간의 합병 거래

국내 유수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아이에이치큐(iHQ)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씨유미디어는 각사가 보유한 우수한 콘텐츠 제작 능력과 유통 채널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iHQ가 씨유미디어를 흡수하는 형태로 합병을 결정하였고,

2015년 3월 17일 성공적으로 합병절차를 마쳤습니다. 또한 본건 합병대가로 발행된 iHQ의 합병신주 9871만 5945주를 2015년 3월 31일 유가증권시장에 성공적으로 우회상장하였습니다.

본건은 연예기획 및 콘텐츠 제작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방송 콘텐츠의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의 합병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거래였습니다. 또한 기존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소멸하고, 합병 후 존속법인이 이러한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인·허가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합병상장의 경우 우회상장에 대한 진입 심사기준이 강화된 이후 유가증권시장에 우회상장하는 첫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큰 사안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iHQ와 씨유미디어 양사를 대리하여 본건과 관련된 일체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인수·합병, 자본시장, 방송·통신 전문그룹 소속 변호사들이 각 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본건 합병과 관련된 제반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에서 전례가 없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지위 승계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 명확하지 않은 절차들을 규제기관과 신속히 협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방송사업과 관련된 정부 승인을 신속히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향후 콘텐츠 제작 사업자와 이를 유통하는 사업자간의 전략적인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건은 이러한 흐름에 있어 상징적인 합병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세 및 국제통상

광고선전비 관련 관세 소송 승소

2015년 3월, 수입물품에 대한 로열티 계산 시 수입자가 부담한 광고선전비를 차감하여 로열티를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건에서 과세당국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부담한 광고선전비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수입물품의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할 경우 그 활동의 가치는 관세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부과처분을 전액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위 사건에서 수입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국제협정상 구매자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이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를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급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원칙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통해 쟁점 광고선전활동이 수입물품의 국내 시장판매에 관련된 활동인 점을 입증, 광고선전활동 전략 수립 및 계약 체결, 집행 등을 원고들이 직접 수행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

안방생명보험의 동양생명보험(주) 인수

중국의 생명보험회사인 안방생명보험은 2015년 2월 17일 보고펀드 등으로부터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 보통주 67,779,432주(지분율 약 63%)를 취득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6월 1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동양생명의 대주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건 동양생명 인수와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는 안방생명보험을 대리하여 동양생명에 대한 법률실사, 인수계약 작성 및 협상,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금융위원회에 대한 대주주변경승인신청, 그 밖에 주요한 법률자문업무를 제공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처분 취소소송 승소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4월 15일 에르고다움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현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마크 루돌프 샴프(“원고”)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처분 취소소송(“본건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2013년 4월 19일 원고가 위법·부당한 보험요율 인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보아 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문책경고(상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5월 16일 원고는 보험요율 산출과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위법·부당한 보험요율 인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장의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4월 15일 1심 판결이 타당함을 확인하는 2심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전결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로서의 행위자라고 할 수는 없고, 실제 업무처리에 관여한 행태 및 정도 등에 따라 행위자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건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수상소식

올해의 최우수 아시아 로펌 선정 - International Legal Alliance Summit & Awards 2015

김·장 법률사무소가 'International Legal Alliance Summit & Awards 2015'에서 올해의 최우수 아시아 로펌상(Best Asian Law Firm: Gold Award)를 2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International Legal Alliance Summit & Awards'는 금융 및 법률 미디어그룹인 Leaders League가 발표하는 시상식으로, 올해로 8년째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캐나다, 미국의 최우수 로펌 및 Rising Star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5

김·장 법률사무소가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5'에서 올해의 한국 로펌(South Korea National Law Firm of the Year)상을 수상하였습니다.



Chambers Asia-Pacific Awards는 Chambers and Partners Guide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리서치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업무실적 및 성장세, 고객 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국내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낸 아시아·태평양 각 지역별 선두로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Chambers and Partners는 세계 각국의 로펌 순위 가이드북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는 'Chambers Global 2015' 및 'Chambers Asia-Pacific 2015'에서도 주요 업무분야의 국내 선두로펌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0년 연속 올해의 한국 로펌 선정 - Who's Who Legal Awards 2015

영국제 법률미디어 Law Business Research의 브랜드 Who's Who Legal이 4월 27일 워싱턴에서 개최한 'Who's Who Legal Awards 2015'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올해의 한국 로펌(Korea Law Firm of the Year 2015)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2006년 이후 10년 연속 Korea Law Firm of the Year로 선정되어 왔습니다.



'Who's Who Legal Awards'는 60개 국가/주(州)의 주요 로펌 및 변호사에 대한 기업 고객들의 설문을 토대로 수상자를 결정하며, 올해의 로펌을 비롯하여 국가별·업무분야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동정

2015 굿 컴퍼니 컨퍼런스 강연

김·장 법률사무소의 정경택 변호사가 '2015 굿 컴퍼니 컨퍼런스'에 강연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 주제 중 하나인 'Compliance(준법)'에 대해 강연하였으며, 기업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과 선제적 관리 체제 구축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시사저널의 주최로 5월 2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진행되었으며, 국내외 석학들이 참석해 'Compliance(준법), Reputation(평판), Performance(성과)'를 주제로 강연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 참여

김·장 법률사무소의 최명석, 장지수, 조성훈, 강한철, 이환범, 박종국, 전종원, 김은희, 김승효, 한은주 변호사가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에 참여하여, '공정경쟁규약 관련 모의재판'을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형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사건 처리 절차를 재현하였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5월 22일 한국제약협회(KPMA)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제약산업 공정경쟁규약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보완점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국제운송 클레임 대응방안 기업설명회 발표

김·장 법률사무소의 정병석, 이철원 변호사가 '국제운송 클레임 대응방안 기업설명회'에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6월 22일 김·장 법률사무소와 한국무역협회, 대한상사중재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본 설명회에서, 정 변호사는 '국제운송의 법률문제' 관련 국제운송 법률관계와 국제분쟁 해결절차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국제운송 관련 분쟁 사례'를 주제로 기업의 도산 관련 분쟁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사회공헌 소식

성북구-김앤장, 성북미래법조인 꿈키움 프로젝트 추진

김·장 법률사무소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종암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2014년 3월 성북구청과 '교육분야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지역청소년들의 꿈을 키워가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김앤장 직업체험프로그램, 모의법정체험캠프, 김앤장과 함께하는 영어이야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김·장 법률사무소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K&C 가람장애인인쇄공방'을 설립하였습니다. K&C 가람장애인인쇄공방은 저희 사무소가 지분의 70%를 출자해 올해 3월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았고, 현재 10명의 중·경증 장애인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K&C 가람장애인인쇄공방을 통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Newszine July 2015, Issue 2

KIM & CHANG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9 (우) 03170
전화: 02-3703-1114 팩스: 02-737-9091/9092 이메일: lawkim@kimchang.com www.kimchang.com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저희 사무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치나 행위에 앞서서는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은 출처와 저자(KIM & CHANG)를 밝히고 내용을 임의 편집하지 않는 경우, 개인적인 용도에 한하여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정보 전달 서비스의 수신인을 추가하고자 하시면 newsletter@kimchang.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